

학위 논문에 관한 내규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5장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원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 할 수 있다.

1. Th.M.과정 원생은 38학점 이상 취득한 자.
M.Div.과정 원생은 80학점 이상 취득한자.
단, 비목회.기안수자과정의 원생은 교단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다.

2.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입학일로부터 재학연한을 넘기지 않은 자

제 3조(학위 논문) 학위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잘 드러나야 하고 다루는 주제와 그 내용이 학술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제 4조(논문 지도교수)

1. 해당 원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박사학위소지자)를 위원회 결의후 원장이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2.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국내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교원에 대하여는 학위논문 지도교수로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3. 논문 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생의 논문지도가 불가능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 5조(학위논문 원고제출) 원생은 학위논문 원고 3부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신청서와 함께 신학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

제 6조(심사 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과 위원장을 제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내규 4조를 준용하되, 외부 심사위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조(심사위원장) 원장으로 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장은 학위논문 심사를 주도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학위논문 심의의 구분) 삭제

제 9조(논문심사 방법)

1. 학위 논문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학위 논문심사는 본 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한다.
3.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학위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취급방법의 타당성과 논문 내용의 적격성 그리고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4.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날인 받아 소정기일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구술시험)

1. 학위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2. 논문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구술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 단, 재 시험에 불합격될 경우 논문의 합격 판정은 취소된다.

제11조(논문 심사판정) 논문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주 논문 주제의 타당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및 구술시험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가”, “부”로 판정한다. “가”로 평가할 때 합격으로 판정하며, “부”로 평가할 때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12조(학위논문의 규격)학위논문의 규격은 신학대학원 논문 작성요령 및 양식에 따라 한다.

제13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4부(인준논문 1부 포함)를 CD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신학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